

2026년 새활용타운 잔재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과업설명서

2026. 1.



군포도시공사
Gwangju Urban Corporation

과업설명서

1. 용역명: 2026년 새활용타운 잔재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2. 과업개요

가. 목적

군포환경관리소 2026년 상·하반기 정기 보수 기간 및 긴급 보수 기간 중 새활용타운에서 발생하는 잔재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적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여 안정적 시설운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잔재폐기물: 새활용타운에서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물을 의미함)

나. 잔재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의 위탁자는 군포도시공사 사장이며, 수탁자는 폐기물처리업체로서 폐기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 처리물량: 600톤 (1일 10톤 × 60일) ※물량 및 사업기간은 증감 조정될 수 있음.

라. 용역기간: 2026년 착수일로부터~12. 31. (예정)

※ 용역 기간은 위탁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휴일은 제외한다.

마. 집행예정금액: 단가 220천원 × 600톤 = 금132,000천원 (부가세 면세)

※ 잔재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처리단가에 포함됨

3. 자격요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어 용역계약 체결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다. 「폐기물 관리법 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가입되거나 폐기물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가입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 되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라.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의한 아래 각 목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수집·운반 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업체
(처리시설 1일 기준 10톤 이상 폐기물 처리 시설 보유)

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②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③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한 경기도 내 주된 사업소를 둔 업체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4. 과업설명

가. 잔재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 1) 본 과업내역의 잔재폐기물은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한다.
- 2) 잔재폐기물의 운반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7:00 ~ 17:00 내에 수탁자의 처리시설로 운반·처리되어야 하며 부득이 시간을 조정해야할 경우 위탁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다른 발주처의 폐기물보다 우선하여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3) 수탁자는 1일 10톤 이상 잔재폐기물 운반·처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지정한 잔재폐기물의 적재장소(새활용타운)에서 수탁자가 처리시설까지 수탁자의 차량으로 직접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4)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잔재폐기물 운반·처리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날짜에 반드시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 5) 수탁자의 잔재폐기물 운반차량은 새활용타운 현장의 운반차량 진·출입 및 적재공간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현장 업무가 적합한 차량을 배차하여야 하며, 잔재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허가 및 등록을 득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 6) 잔재폐기물의 원활한 운반·처리를 위하여 수탁자는 운반차량을 시간에 관계없이 대기시켜 잔재폐기물의 운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운반차량을 추가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7) 수탁자는 잔재폐기물 적재함(암롤박스) 2기 이상을 사용하여 위탁자의 새활용타운 내 적재 장소에 적치한 후 운반·처리하며 잔재폐기물을 상차한 적재함을 수시로 운반·처리 하여 잔재폐기물 운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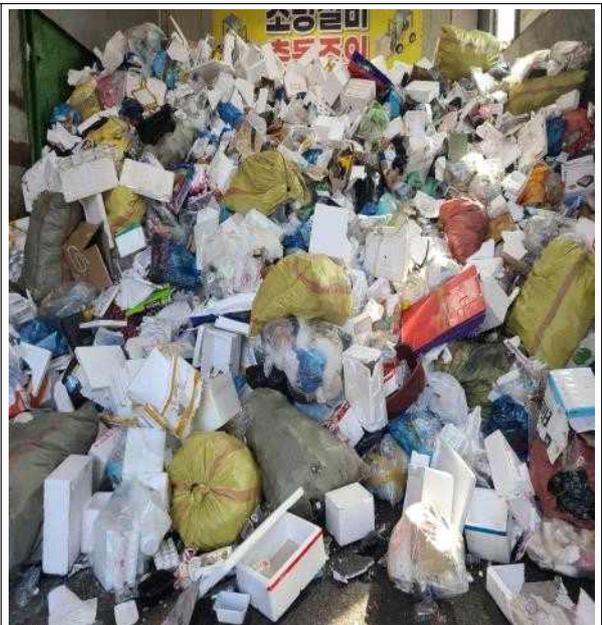
- 8) 본 용역사업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위탁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행정처분, 민·형사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 9) 수탁자는 잔재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위탁자에게 사유와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10) 도급권(대행사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금지한다.
- 11) 수탁자는 처리장비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위탁자가 요구하는 잔재폐기물 처리를 거절, 중단, 유보해서는 안 되며 계약기간 내에 상기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12) 잔재폐기물의 운송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탁자에게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한다.
- 13) 잔재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하여 올바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 인수인계 현황을 등록하여야 한다.

나. 위탁처리량 및 성상

- 1) 단가계약의 처리물량은 총량이며, 처리물량은 증·감 조정될 수 있다.
- 2) 잔재폐기물은 군포새활용타운에서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물로 현장 상황과 적재 장소 등을 면밀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낙찰 후에는 성상 및 현장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새활용타운 잔재폐기물 사진1



새활용타운 잔재폐기물 사진2

다. 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급 및 산정방법

- 1) 잔재폐기물 위·수탁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처리비와 운반비를 구분하여 톤당 금액에 곱하여 지급한다.
- 2) 위탁처리 물량산정은 위탁자(군포도시공사)가 설치한 계량시스템으로 산출하되, 계량단위는 Kg(킬로그램)으로 하고 합계는 ton(톤)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원단위 이하 절사)
- 3) 수탁자는 잔재폐기물 운반·처리비 지급신청은 실제 처리한 물량에 따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의 처리시설로 잔재폐기물을 운반 할 경우 수탁자는 운반비를 제외한 처리비만 산정하여 지급 신청한다.
 - 가) 운반비는 톤당 처리비의 3할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라. 계약의 해지 및 배상

- 1) 계약의 해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가)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 나) 위탁자의 반출요청 등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잔재폐기물 운반·처리를 못하여 잔재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② 수탁자의 차량 관리 및 정비 소홀로 운행 지연 등의 사고로 2회 이상 경고 시
 - ③ 운전자의 불성실로 잔재폐기물의 운반이 지연되어 2회 이상 경고 시
 - ④ 기타 위와 유사한 수탁자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잔재폐기물 운반·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다) 위탁물량의 임의 하도급 행위 및 지정된 장소이외의 장소에 수송 처리하는 경우
 - 라) 수탁자가 계약불이행으로 폐기물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2) 1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마. 책임 및 보안

- 1) 본 계약기간 중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새활용타운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재정상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2)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돌발재해에 대한 보상금은 전액 수탁자가 부담하고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일체의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 수탁자는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에도 계약 이행으로 인지한 업무상 자료나 정보를 위탁자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을 금하며, 3년간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5. 기 타

- 가.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구하는 잔재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나. 군포도시공사는 수탁자의 잔재폐기물 처리 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과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다.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군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라. 기타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해석을 따르며 분쟁발생으로 인한 소 제기시에는 위탁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